

건 조(별 도 건 조) 검 사 신 청 서

※ □는 해당란에 √표시하며,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건	①성명(대표자명)				
조	②주 소				
자	③상 호	(전화 :)			
소	④성명(대표자명)				
유	⑤주 소				
자	⑥상 호	(전화 :)			
⑦건 조 번 호		⑧선 적 항			
⑨선 종	□기선 □범선 □부선 □기타	⑩선 질	□강 □목 □FRP □기타		
⑪용 도		⑫총 톤 수	톤		
⑬선 박 길 이	미터	⑭추 진 기 관	[kW] [kW]	[PS] [PS]	대 대
⑮항 해 구 역	구역	⑯착공(예정)일	년	월	일
⑰준공(예정)일	년 월 일	⑱수검요청일자	년	월	일
⑲수 검 장 소					
⑳비 고					
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건조(별도건조)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					
구 비 서 류	1.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.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(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) 나. 검정증서·확인서 또는 합격증서·예비검사증서 2.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(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)				

제출하는 곳	대행검사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급법인)	처리부서	지역별 사무소
수 수 료	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	처리기간	건조기간 + 25일 (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)
유 의 사 항	☐ 벌칙 규정 ○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☐ 건조검사 대상 선박 ○ 모든 선박 ☐ 별도건조검사 대상 선박 ○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선박 ○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선박 ☐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○ 선체, 기관, 배수설비, 조타설비, 계선·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○ 만재흡수선(해당 선박만 검사받습니다) ☐ 기 타 ○ 건조검사는 해당 선박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. ○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검정증서·확인서 또는 합격증서·예비검사증서는 해당 선박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○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.		